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대표발의: 권 영 숙 의원)

의 안 번 호 23-131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.

발의자: 권영숙, 남해석, 장정희, 차해영,

채우진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마포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"풍수해", "풍수해보험", "보험료" 정의

나.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)

- 실태 조사·분석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

다. 풍수해보험료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 규정(안 제4조~안 제9조)

- 보험목적물(안 제4조), 지원대상(안 제5조),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, 지원한도(안 제7조), 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(안 제8조) 등

라. 환수조치(안 제10조)

-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

마.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(안 제11조)

- 구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

3. 관계법령

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풍수해보험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8. 17. ~ 8. 2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**풍수해**"란 「**자연재해대책법**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·홍 수·호우(豪雨)·대설·지진(지진해일을 포함한다)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 - 2. "풍수해보험"이란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.
 - 3. "보험료"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·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보험목적물)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(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)으로 한다.

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
- 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
- 제5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으로한다.
 -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단독주택·공동주택(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의 소유자 및 세입자
 - 2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
- 제6조(보험료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풍수해보험법」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에 따른다.
 - ③ 구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「풍수해보험법 시행령」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한도) 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5조제1호: 10만원 이내
 - 2. 제5조제2호: 20만원 이내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.
- 제8조(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)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(동 주민센터 포함)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보험료 지급방법 등)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그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 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제11조(풍수해보험 가입 홍보)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17호, 2022. 12. 27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재해"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기본법"이라 한다) 제3 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.
- 2. "자연재해"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(이하 "자연재난"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.
- 3. "풍수해"(風水害)란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조수, 대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1. 3. 7.]

□ 풍수해보험법

[시행 2022. 4. 5.] [법률 제18686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28.]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4. 12. 30.>
 - 1. "풍수해"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 ・홍수·호우(豪雨)・강풍・풍랑・해일(海溢)・대설・지진(지진해일을 포함한다)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.
 - 2. "풍수해보험"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.
 - 3. "보험가입금액"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.

- 4. "보험료"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5. "보험금"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6. "손해평가"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(査定)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손해평가인"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08. 3. 28.]
- 제7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수 있다. <개정 2010. 3. 31., 2022. 1. 4.>
 -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3. 31.>
 -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 1. 4.> [전문개정 2008. 3. 28.]
- 제4조(보험목적물)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(이하 "보 험목적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 는 동산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, 2020, 2. 4.>
 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
 - 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
 - 3.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풍수해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풍수해보험료 지급
- 풍수해보험법 제23조(보험가입의 촉진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풍수해보험금 지급실적(최근5년)

보험금	보상목적물	건수	사고원인	지급보험금	보험종류
지급년도	주소(주택)	신구	시포현한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上百0世
2016	도화동	1	강풍(소파)	74천원	풍수해보험3
2016	염리동	1	호우(반파)	1,200천원	풍수해보험2
2017	망원동	1	호우(침수)	1,200천원	풍수해보험2
2017	망원동	1	호우(침수)	1,200천원	풍수해보험2
2020	서교동	1	호우(침수)	2,000천원	풍수해보험1
2022	연남동	1	호우(침수)	9,778천원	풍수해보험1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통건설국 물관리과 이상원
연 락 처	02-3153-9814